유엔 제재: 법적 메커니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유엔법(United Nations Act 2001)은 장관에게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1] 각 유엔 제재 체계별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테러리즘(결의 1373호와 ISIL 및 알카에다 명단을 시행하는 United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Regulations 20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2] 이 규정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싱가포르 밖의 모든 시민이 지정 대상자의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은 벌금과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에는 두 번째 층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s. 27A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감독 대상 기관에 지정 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삼가도록 지시하는 자체 규정을 발령합니다. 이 규정들은 유엔 규정과 같은 내용이지만 MAS가 감독 사항으로서 집행합니다.[3] 이러한 이중 구조 때문에 유엔 지정 대상자를 위해 거래를 실행한 디지털 지급 토큰(DPT) 라이선스 보유자는 유엔법 규정에 따른 형사 범죄와 MAS 규정에 따른 감독상 위반을 동시에 저지르게 됩니다. 테러(자금조달 억제)법(TSOFA)은 테러리즘에 관해 세 번째 층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더합니다. 이 법은 제1부속서(First Schedule)와 장관 명령으로 지정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의 재산을 취급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제IV장에서 다룬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4]

실무상 지정과 동결

싱가포르 규정은 유엔 명단을 참조 방식으로 편입하므로, 유엔 지정은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이를 공표하는 때에 싱가포르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정 대상자가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공백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DPT 라이선스 보유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형태로 유엔 통합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해야 하며, 상용 심사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제공합니다. 일치가 확인되면 라이선스 보유자는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며, 지체 없이 경찰청장(Commissioner of Police)과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5] 라이선스 보유자가 키를 보유하고 있다면 DPT 잔고의 동결은 기술적으로 간단합니다. 고객의 출금 기능을 차단하고 사업자의 장부에서 잔고를 분리하면 됩니다. 이미 온체인에서 사업자의 지갑으로 결제가 완료된 수신 이전을 동결한다는 것은 이를 어떤 고객 계좌에도 입금하지 않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전파(broadcast)된 송신 이전은 동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반드시 전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DPT 부문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북한 제재 체계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 국가 행위자, 특히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거래소, 브리지 및 개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탈취하여 정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믹서, 장외 브로커, 체인 갈아타기(chain-hopping)를 통해 세탁한다는 사실을 수년간 기록해 왔습니다.[6] 라자루스의 탈취로 추적되는 토큰을 받은 싱가포르 DPT 라이선스 보유자는 어떤 명단에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유엔 지정 단체의 경제적 자원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지정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분석은 자금세탁방지 도구일 뿐 아니라 제재 도구이기도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United Nations Act 2001(2020 Revised Edition), s. 2(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s. 5(범죄 및 벌칙); 이 법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에 대응하여 2001년 10월 제정되었습니다. ↩
2. United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Regulations 2001, regs 4–6(테러리스트 재산 취급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의 금지) 및 reg. 10(보고 의무); United Nations (Sanction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s 2010(개정 포함); 그 밖의 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체계에 관한 동등한 규정. ↩
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s. 27A(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제정 권한);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anctions and Freezing of Assets of Person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s 2016 및 다른 제재 체계에 관한 동등한 규정. ↩
4. Terrorism (Suppression of Financing) Act 2002, s. 6(테러리스트 재산의 취급), First Schedule(지정 테러리스트) 및 추가 대상자를 지정하는 s. 2에 따른 명령. ↩
5. United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Regulations 2001, reg. 10; MAS Notice PSN02, para. 6(심사)을 금융기관에 동결 자산과 거래 시도를 MA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MAS s. 27A 규정과 함께 해석. ↩
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s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2019–2024년 연례 보고서,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에 관한 부분; 패널의 임무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종료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